

가상강좌 운영 규정

제정 2013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대학”이라 한다.) 가상강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) ① 가상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상강좌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한다.

③ 가상강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가상강좌 개설과정의 선정
2. 가상강좌 콘텐츠의 개발 심사
3.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운영교과) 가상강좌 운영교과목은 가상강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5조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 방법 및 시기는 매 학기 일반교과 수강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.

② 신청학점은 학칙에 정한 총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

③ 교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은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강의공개) 가상강좌 운영교과목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공개 교과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수업기간 및 수업주수) 수업기간 및 수업주수는 일반강좌와 동일하게 15주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시험) 시험은 과제물부과, On-line Test, 출석시험을 병행하여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9조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의 준거와 비율은 출석10%, 과제40%, 시험30%, 토론참여 20% 등으로 구성하여 성적을 부여하되, 강좌별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성적평가단위로 A+, A0, B+, B0, C+, C0, D+, D0, F급으로 분류하며, D0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.

③ 성적평가는 학기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Web상에서 수강학생들의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.

제10조(시간계정) ① 가상강좌의 시간계정은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② 가상강좌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출강일수 산정은 가상강좌 당 1일 출강으로 인정한다.

제11조(컨텐츠개발) ① 컨텐츠개발은 담당교수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에 따라 외부 수주에 의하여도 컨텐츠 개발을 할 수 있다.

② 컨텐츠 개발비는 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